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가단14942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2. 10. 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775,3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1,775,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2. 10. 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1,775,3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1,775,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E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39262호로 F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9. 10. 위 법원으로부터 “D은 E 주식회사에게 3,165,219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E 주식회사는 2018. 11. 16.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1. 3. 24.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위 양수금 채권은 2022. 11. 3. 현재를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4,785,42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2) G 주식회사는 2018. 3. 12. D에게 10,000,000원을 이자 및 연체이율 각 연 24%, 변제기 2020. 5. 1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D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9. 12. 16.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20. 1. 13.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497606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1,524,062원 및 그 중 8,430,777원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22. 11. 3. 현재 원리금 합계 16,989,973원 및 그 중 8,430,777원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3) 따라서 원고는 2022. 11. 3.을 기준으로 D에게 합계 21,775,397원(=4,785,424원+16,989,97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D 및 피고들은 부(父)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22. 4. 23. 사망한 후 각 1/3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인데, 망인이 2022. 4. 23. 사망하자, D 및 피고들은 2022. 10.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각 1/2 지분)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6. 피고들의 공유(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망인이 사망한 ‘2022. 4.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그 후 2022.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2016. 2. 18.자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88,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2,324,269원이었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115,000,000원, 전세권자 J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다.

다. D의 채무초과상태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2. 10. 6. 원고에 대한 위 각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기업은행, K, L카드, M, N,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각종 채무로 합계 150,7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D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5. 8. 31.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후 2018. 11. 20.까지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채무가 크게 증가한 사실, D의 아버지인 망인은 2016. 2. 18.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주식회사 I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D에게 49,97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그 후 망인은 D에게 2018. 1. 15.

10,000,000원, 2018. 2. 12. 5,000,000원, 2018. 2. 19. 3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준 사실, 망인이 사망한 2022. 4. 2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85,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D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94,970,000원(=49,970,000원+10,000,000원+5,000,000원+30,000,000원)은 그 액수, 지급 시점, D의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이 D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D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85,000,000원에 D에 대한 생전 증여 가액 94,970,000원을 합산한 279,970,000원에 D의 법정상속분 1/3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 93,323,333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에서 D의 수증재산인 94,970,000원을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D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없게 되므로, D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D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아파트

1층 692.70㎡, 2층 내지 14층 각 681.35㎡, 지하실 621.2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북구  대 73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1.5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7388분의 36.037 끝.

